

14-26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

● 사업목적

-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

●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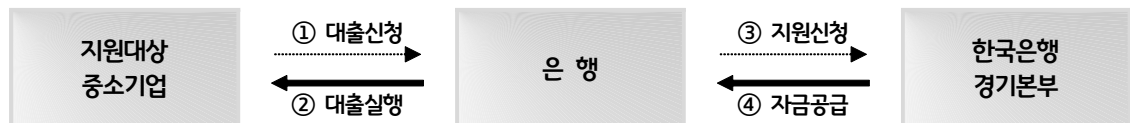
지원부문	지원대상기업 ¹⁾	지원가능 은행 소재지	지원대상 업체 소재지
전략지원부문	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벤처, 혁신, 녹색, 추천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²⁾	경기도 ³⁾ , 서울특별시	경기도
특별지원부문	경기민감업종(조선업, 해운업) 및 경기부진업종(도소매업, 운수업, 음식·숙박업 등) 영위기업 * 대출실행이 23.8.3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	경기도, 서울특별시	경기도
일반지원부문	일반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⁴⁾ , 명절자금, 재해자금 등	경기도 서울특별시	경기도, 경기도·서울특별시 이외 경기도
코로나19지원	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, 제조업(일부)	경기도	경기도

- 주: 1) '한국은행 경기본부 C2자금 배정 제외업종' 제외
 2) '한국은행 경기본부 C2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' 참고
 3) 경기도에서 김포시, 부천시를 제외하며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
 4) '한국은행 경기본부 전략산업' 참고

● 신청방법

- 지원가능 소재지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(위 지원대상 표 참조)에 방문 신청

● 지원절차



●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업체당 최대 5억원에서 15억원(지원부문에 따라 상이)
- 대출금리 : 대출취급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
- 지원기간 : 최장 5년 (코로나19 피해 지원부문은 최장 1년)

● 문의처

기관명	부서명	전화
한국은행 경기본부	업무팀	031-250-0092, 0107

붙임

● 한국은행 경기본부 C2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전략 지원부문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 확인기관」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
	혁신기업	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- 정부의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인증을 획득한 중소제조기업 - 산학연 collabo R&D 사업 및 산학연협력 신사업 R&D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- 기술평가전문기관이 발급한 「기술평가인증서」를 보유한 중소기업(단, 협약체결금융기관이 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대출취급점장이 <별지 제5호 서식>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 한함)
	녹색기업	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,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,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및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, 녹색사업 인증,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(설비인증)을 받은 기업
	추천기업	-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및 G마크 인증기업 -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(상법상 회사에 한함) -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추천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-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 보증대출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중소기업 -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기업, 브랜드K 선정기업
	소재·부품 생산기업	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
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-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농업, 임업 및 어업(KSIC 01~03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상 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을 포함)
	고용우수기업	- 선정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고용인원증가율이 전년말(최근 3개월에 속하지 않는 연도말 기준) 대비 5%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반기 상시근로자수 고용인원 증가율이 전기 대비 5% 이상인 기업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장애인고용우수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기업 - 경기도가 인증한 일자리우수기업 -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우수기업 -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용기업 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
특별 지원부문	경기부진·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	- 조선업(KISC 311), 해운업(KISC 501, 502), 음식·숙박업(KISC 55~56, 단 5621 제외), 도소매업(KISC 45~47), 여행업(KISC 752), 운수업(KISC 49, 51~52), 여가업(KISC 90, 911) 영위기업
일반 지원부문	경기본부 전략산업 영위기업	- 「한국은행 경기본부 전략산업」 참고
	명절·재해 자금 등	- 명절·연말 등에 따른 자금수요, 자연재해·연쇄부도 등 지역경제사정에 따른 긴급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특별히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코로나19 지원부문		-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서비스업 -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일부 제조업 ○ 조업 정지 또는 단축 제조업 ○ 매출 감소 제조업(신규 지원 제외)

● 한국은행 경기본부 전략산업

○ 「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전략산업¹⁾

	산업명	내 용	KSIC ²⁾	
차세대 성장동력 산업	로봇산업	산업용 로봇제조	2928	
	나노산업	「나노기술개발촉진법」에 따른 나노기술기반 제품생산업체	-	
	신재생에너지산업	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인증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생산업체	-	
	제약산업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	211, 212	
글로벌 산업	고령친화산업	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고령친화우수제품생산업체 및 고령친화우수사업자	-	
	디스플레이산업	표시장치 제조업	2621	
	반도체산업	반도체 제조업	261	
항만물류산업	항만물류산업	외항 및 내항 화물운송업	50112, 50122	
		항만 내 여객 운송업	50202	
		항구 및 기타해상터미널 운영업	52921	
		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	52929	
	관광레저산업	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국내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, 유원시설업	-	
	전시컨벤션산업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75992	
	지식기반 서비스업	영상·정보기술(IT) 산업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58~63
			연구개발업	70
			광고업	713
		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경영컨설팅업			71531	
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			72	
전문디자인업			732	
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		73902	
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		73903	
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		73909	
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		741	
보안시스템 서비스업			7532	
포장 및 충전업			75994	
온라인 교육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에 한함)	85503			
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	8566			
창작, 예술관련 서비스업	901			
전통 산업	섬유산업	섬유제품 제조업	13	
	가구산업	가구 제조업	32	

주 : 1) 해당 업체가 복수의 사결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,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,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
2)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차

○ 본부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연관산업¹⁾

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KSIC, 10차)
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5 (단 251, 2520, 2592, 2593, 2594, 2599 제외)
전자부품 등 제조업	26
전기장비 제조업	28 (단 284, 285, 289 제외)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 (단 291, 2925, 2929 제외)

주 : 1) 해당 업체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,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,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

● 한국은행 경기본부 C2자금 배정 제외업종

지원제외대상 업종 ¹⁾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KSIC, 10차)	
제조업	33402 중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중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7 중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주점업	56211, 5621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	56219	기타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 중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	63999 중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 중	홍신소
	75993	신용 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보건업	86	보건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	이용업 및 미용업
	96122	마사지업
	96999	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
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	97~98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

주: 1) 해당 업체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